■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2서식] <개정 2019. 12. 20.>

유해화학물질 시약 정보 요약서		이 요약서는「화학물질관리법」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시약을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준수하여야함을 구매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매업 상호(명칭)		하크코리아 유한회사
판매업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06길 5, 2층 (삼성동, 아이파크타워 2)
판매업 대표전화		02-3484-5700
유해화학물질 정보	물질명	Nitric acid
	고유번호 또는 식별번호 (CAS No.)	7697-37-2
	용도	수질 분석용 시약
취급 기준 준수	취급시설	- 눈에 들어갔을 때는 눈꺼풀을 가끔씩 깜박이면서 다량의 미지근한 물로 씻을 것. - 취급시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지 말 것. - 흡입하였을 때는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장소로 옮길 것. - 환자의 호흡이 멈추었으면 호흡용 기구(예: pocket mask)를 이용하여 호흡을 유도할것. 호흡이 곤란하면 산소를 공급해 줄 것. 환자가 섭취 또는 흡입하였을 경우 구강대 구강 인공호흡법(mouth-to-mouth)은 사용하지 말 것. - 피부와 접촉했을 때는 즉시 오염된 의복을 벗길 것. 오염물이 피부에서 확산되지 않도록 할 것. 비누와 흐르는 물로 오염물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씻어낼 것. - 삼켰을 때는 구토를 유도하지 말 것. 위세척을 하기 전에 4~8온스(120~240mL)의 물이나 우유를 마셔 독성을 희석시킬 것(아이들에게는 15mL/kg 이상 먹이지 말 것). - 의식이 온전하지 못할 때는 삽관(揷管), 흡출, 위세척 등의 방법으로 즉시 위내(胃內)를 비울 것. - 작업장 부근에 비상시를 대비하여 샤워시설 및 세안시설을 갖출 것. - 사소한 피부접촉이라도, 물질이 피부의 다른 부위로 퍼지지 않도록 조심할 것. - 피해자를 따뜻하게 해주고 안정시킬 것. - 노출(흡입, 섭취, 피부접촉) 영향이 지연되어 나타날 수 있음. - 의료진에게 사고물질의 특성을 알려,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수 있게 할 것.
	화학사고 예방	- 가스/연기/증기/분무 등을 호흡하지 말 것. - 물을 첨가하면 열이 발생되어 격렬하게 끓고 튀길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 취급 시 양압자급식호흡용보호구(positive pressure self-contained breathing apparatus), 보호의, 보호장갑을 착용할 것. - 사고 시 혹은 불쾌감을 느끼면 즉시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가능하면 용기 또는 포장의 표시사항을 보여줄 것). - 저장, 취급 시 음료 또는 음식을 먹지 말고 금연할 것. - 눈과 접촉 시 즉시 다량의 물로 씻어내고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 - 증상은 시간이 경과한 후에 나타날 수 있음. - 적절한 보호복을 착용할 것. - 빈 용기에는 잔류물(증기, 액체 및 고체)이 남아있어 위험할 수 있음. - 저지대에 머물지 않도록 할 것. - 밀폐된 장소는 반드시 환기 시킬 것. - 금속분말, carbides, 황산, 테레핀과 만나 폭발적으로 반응하므로 주의할 것 - 플라스틱과 고무, 도료를 부식시키므로 주의할 것-
	보관・저장	- 통풍이 잘 되고 빛과 열기에서 분리된 시멘트바닥의 냉암소에 밀폐 보관할 것. - 식료품, 사료, 의약품, 음식, 알칼리성물질과 혼합저장하지 말 것. - 필요에 따라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 환기시킬 것.C13
	운반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저장·적재·입출고 중에는 내용물이 환경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포장할 것 - 유해화학물질 운전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이어야 함.
	기타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할 것 - 화학사고 발생 시 소방서 및 화학 물질안전원, 합동재난방재센터 등 화학사고대응기관에 연락할 것 - 취급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